1. 전기설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누가 선임해야 하는지

■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, 자가용전기설비(107kW)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누가 선임해야 하는지

Answer

⊙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· 유지 ·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"점유자"라 함은 지상권, 전세권, 질권, 임대차 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자를 말합니다.

⊙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4. 12. 31)

2. 전기안전관리자 통합(동일소유 건물2동)선임 가능 여부

■ 소유자는 1인이나 번지가 서로 다른 2동의 건물에 한전으로부터 각각(A동 2,350kW, B동 1,350kW)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(A동)과 건물(B동)사이에 4차선 차도가 있는 경우,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2동의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겸임할 수 있는지

Answer

⊙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· 유지 ·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
⊙ "사업장"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 · 울타리 ·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.

⊙ 그러나, 귀하의 경우 각각 다른 건물로 4차선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4. 2. 2)

3. 전기안전관리자 통합(통합관리소, 아파트2개단지) 선임 가능여부

■ 동일건설사가 건립한 아파트로 지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두 소규모아파트를 통합하여 1개의 관리소가 관리하고 있으며, 변전실이 각각 구분(1단지 1,675kW, 2단지 1,300kW)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를 통합하여 1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

Answer

⊙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·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
⊙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.

⊙ "사업장"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 · 울타리 ·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.

⊙ 귀 단지의 경우에는 도로로 구분되어 동일구내로 볼 수 없으므로, 전기설비별(1단지 1,675kW 및 2단지 1,300kW)로 각각 선임하여 상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5. 3. 3)

4. 전기안전관리자(자체직원)와 보조원(시공사직원) 소속이원화 선임가능여부

■ 공사기간 및 감리배치기간이 남아 있는 현장에서 법적 감리원배치일수를 초과된 경우에 자체감리를 해임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
■ 전기안전관리자는 자체직원으로 선임하고, 보조원은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

Answer

⊙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현장에 배치된 자체감리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리원배치변경신고하여야 가능하며, 감리기간중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.

⊙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시공사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(안전관리자 및 보조원)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.

⊙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(안전관리자 및 보조원)는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,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4. 8. 26)